

반송불능우편물(유가물)공고

우편법 제36조에 의하여 송달할 수 없는 우편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.07.20.

서귀포우체국장

1. 반송불능우편물 내용

종 별	접수일 혹은 최초발견일	내용품	수량 (박스)	등기번호	발송인	수취인	비고
유가물	2016.11.14.	신발(1), 신용카드(1)	1	66923-0417-4005	김*혁	김*훈	
	2016.12.07.	건버섯(1), 향수(1), 유자청(1), 수첩(1), 사탕류(1), 육포(1)	1	CP146669465KR	Jam** Bark**	Chr** Bark**	
	2016.06.22.	옷(44), 스카프(1), 모자(1), 책(4) 약세사리 등 잡화(6)	1	CP146701489KR	Timo**** Ril**	Alfr** Ril**	

2. 청구기간: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, 교부 청구가 없을 시 국고에 귀속됨.

3. 문의사항: 서귀포우체국 우편물류과 (☎064-739-3925)

※ 참고사항

유가물로서 멸실 또는 훼손의 우려 있는 것(예: 굴, 생선 등 부패성우려) 또는 보관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곧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되, 매각에 요하는 비용은 매각대금으로 충당합니다. 매각대금은 당해 우편물을 보관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되며, 부패성 우려가 있는 우편물 중 매각이 불가능할 경우 폐기 처리됩니다.